

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관의 장
선	
람	

수 영 구 보 호외 제552호 2020. 3. 31.(화)

조 례

○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-----1

회				
람				

· 발행 : 수 영 구 · 편집 : 기획감사실 (610-4075)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3월 31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984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 광역시 수영구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 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 - 2. "긴급생활안정자금"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대상)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산 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.
- 제5조(지원방법 등)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 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일, 지원금액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③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, 상품권 및 선불 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6조(환수)**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제안이유

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고자 함.

◆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(제4조 ~ 제5조)
- 라. 환수에 관한 사항(제6조)